

의안번호	2205811
의 퇴 인	김영호 의원
회 답 일	2024.12.5.
추 계 번호	24C5381

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립대학병원에 청각장애인·언어장애인 등을 위한 한국수어 통역사를 1명씩 배치하고, 의사소통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한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28억 1,000만원(연평균 5억 6,200만원)으로 추계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구 분	2026	2027	2028	2029	2030	합 계	연평균
한국수어 통역사 인건비	498	516	536	556	578	2,684	537
자산취득비	126	—	—	—	—	126	25
합 계	624	516	536	556	578	2,810	562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9조의2(한국수어 통역서비스 등 제공)	(제1항)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은 장애인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의사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한국수어 통역사를 배치하고 문자통역을 제공하는 등 의사소통 지원체계를 마련하여야 함 1. 「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」에 따른 서울대학교병원 2. 「국립대학병원 설치법」에 따른 국립대학병원	의무규정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 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9조의2(한국수어 통역서비스 등 제공)	○	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「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」과 「국립대학병원 설치법」을 준용하여 총 18개의 국립대학병원에 한국수어 통역사를 1명씩 배치하는 것으로 가정
 - 보건복지부의 “전국 공공의료기관 현황(’23.12월말 기준)”에 의하면, 「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」과 「국립대학병원 설치법」에 따른 국립대학병원은 총 18개소
 - 추계기간 동안 국립대학병원의 수는 변동이 없는 것으로 가정하고, 이미 한국수어 통역사를 배치하고 있는 병원도 1명씩 추가 배치하는 것으로 가정
- 추계기간 중 해당 한국수어 통역사 인건비는 국회예산정책처의 명목임금상승률¹⁾을 적용하고, 자산취득비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소비자물가상승률²⁾을 적용
- 개정안 부칙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

1)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명목임금상승률

(2024.10. 기준, 단위: %)

구 분	2025	2026	2027	2028	2029	2030
명목임금상승률	3.6	3.9	3.8	3.8	3.8	3.8

2)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

(2024.10. 기준, 단위: %)

구 분	2025	2026	2027	2028	2029	2030
소비자물가상승률	2.1	2.0	2.0	2.0	2.0	2.0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- 개정안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립대학병원에 청각장애인·언어장애인 등을 위한 한국수어 통역사를 배치하고, 의사소통 지원체계 마련을 지원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-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국립대학병원에 배치되는 한국수어 통역사의 인건비 및 자산취득비로, 현행 사업의 지원단가 등을 준용하여 산출
- 2024년 총 18개의 국립대학병원에 한국수어 통역사를 1명씩 배치하는 경우 인건비로 총 4억 6,224만원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계
 - 「2024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」을 준용하여 수화통역사 자격증을 취득한 1명의 한국수어 통역사 연봉을 2,568만원으로 가정
- 2024년 각 국립대학병원에 한국수어 통역사를 배치하는 경우 자산취득비로 총 1억 2,132만원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추계
 - 1인당 자산취득비는 국회예산정책처의 2024년 10월 경제전망을 준용하여 674만원(공공기관 기준)으로 가정
 - 자산취득비는 신규 인력 배치에 따른 컴퓨터, 책상, 의자 등 기본 자산의 취득에 필요한 비용
 - 자산취득비는 한국수어 통역사가 배치되는 2026년에만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

4. 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립대학병원에 청각장애인·언어장애인 등을 위한 한국수어 통역사를 1명씩 배치하고, 의사소통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28억 1,000만원(연평균 5억 6,200만원)으로 추계

[표 2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구 분	2026	2027	2028	2029	2030	합 계	연평균
한국수어 통역사 인건비	498	516	536	556	578	2,684	537
자산취득비	126	-	-	-	-	126	25
합 계	624	516	536	556	578	2,810	562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V. 부대의견

- 개정안의 재정소요액은 다음과 같이 가정하였으며, 세부내용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
 - 각 국립대학병원에 한국수어 통역사를 1명 추가 배치한 것을 가정한 추계이고, 한국수어 통역사 수 및 인건비에 따라 추계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
 - 한국수어 통역서비스 관련 의사소통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세부 사업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에 따라 추계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강시온	이진우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강시온	02-6788-4742	sionkang@assembly.go.kr